

## 개인 거주자에 대한 세금 안내 (공개매수)

※본 내용은 KB금융지주의 주주님과는 무관하며 당사의 공개매수에 응하시는 KB손해보험 주주에게만 해당됩니다.

### I.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

#### 1.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

- (1) KB 손해보험 주주님 중 KB 금융지주의 KB 손해보험 주식 공개매수에 응모하여 KB 손해보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(2)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. 양도가액은 주당 공개매수가격 33,000 원에 공개매수 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.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연 250 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
- (3) 양도차익에 대하여 22%(지방소득세 포함)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만, 대주주(지분을 1% 이상 혹은 시가총액기준 25 억원 이상인 주주)인 경우로서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33%(지방소득세 포함)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(4) 양도소득세를 2017년 8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예정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.

#### 2.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

- (1) KB 금융지주의 KB 손해보험 주식 공개매수에는 양도가액의 0.5%의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. 양도가액은 주당 공개매수가격 33,000 원에 공개매수 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.

- (2) KB 금융지주의 KB 손해보험 주식 공개매수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인 KB 증권을 통해서 이행되는 바,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인 KB 증권이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(원천징수)하여 신고 납부할 예정입니다.

## II. 유의사항

1.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셔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주주님께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 47 조의 2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.
2.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,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3. 본건 공개매수의 사무취급자로서 KB 증권이 KB 금융지주를 위하여 공개매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바, 본건 공개매수 관련 세무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1588-6611(KB 증권 고객센터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